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154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7,648,1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48,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0. 12. 15.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D은 2003. 9. 13.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9,000,000원에 매수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D은 2019. 1. 31. 주식회사 G에게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위 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20. 6. 4. 차용금을 변제하고 같은 해 6. 5. 주식회사 G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6. 5. 피고에게 같은 해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D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D과 피고는 2020. 7. 6.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2, 5, 13-2,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2021. 6. 17. 기준으로 D에 대하여 27,648,117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시가 350,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9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그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상당성을 벗어난 이례적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는 원고의 위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매매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 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70,000,000원을 안고 149,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입자금은 피고가 결혼 전까지 저축한 50,000,000원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피고의 1990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수입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D은 돈 한 톨 벌어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고가 벌금, 합의금 등을 납부해 주었다. 이 사건 매매는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앞둔 D과 재산분할을 한 것이고 피고는 D에게 당시 시가 270,000,000원이었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90,000,000원도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의 위 2020. 6. 3.자 매매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이 아니라거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참조).

오히려 을 3, 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D과 혼인기간 중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었고, 위 매매 무렵인 2020. 6. 4.에 36,500,000원, 같은 달. 8.에 29,300,000원, 같은 달 10.에 70,000,000원, 같은 달 16.에 45,000,000원, 이상 합계 180,8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 당시 위 부동산에는 85,000,000원(= 50,000,000 + 35,000,000) 내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목 록

1층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4.93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13835㎡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비율 13835분의 39.6531

- 이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관할
/ 소유자 지분 전부 -

